

초록번호 17-6

제 목	국 문	군장병의 심신장애등급 감정기준에 관한 연구		
	영 문	A study on standard of physical impairment evaluation for Korean Soldier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김관익 ¹ , 손명세 ²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¹ ,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		
	영 문	Gwan-ik Kim ¹ , Myongsei Sohn ² Department of Public Health,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, Medical College of Yonsei University ²		
분 야	보건관리		발 표 자	김관익
발표 형식	구연		발표시간	15분
진행 상황	연구완료 (), 연구중 (O) → 완료 예정 시기 : '98년 11월			

1. 연구 목적

현재 군인이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를 적용하고 있다. 그러나 이 신체감정기준은 1급부터 11급까지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빠져 있는 항목이 있는 등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산재보상보험법 및 국가배상법, 또는 민사소송에서 적용하고 있는 McBride의 장해종합평가표에서는 장해라고 인정하고 있는 항목이 제외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군 장병의 장애등급 판정시 적용되고 있는 심신장애등급표 중 장해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해당하는 장해항목을 McBride의 장애종합평가표와 비교하여 분류 체계 분석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.

2. 연구 방법

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중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해당하는 각각의 항목을 McBride의 장해종합평가표(이 평가표가 완전한 장애평가표는 될 수 없으나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장해의 경우 A.M.A의 장해평가지침이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좀더 세부적임)와 짹짓기하여 일치도를 검증하고자 하며 그 외 장해 분류기준과 심신장애등급표에서 장애급수(1급~7급) 외에 해당하지 않는 있는 항목을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.